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 호 정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행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구한 사건 중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경우 실제 심판청구서 작성을 위해

행정사 혹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원안재결을 받은 경우

이에 들어간 실제 비용 가운데 일부를 지원해  
부당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에 나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